

의안번호	제136호
의결연월일	2020. 10. 21.

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13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2020년 10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사회적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및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가입비 지원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 및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공설시장 공제가입 내용 규정(안 제40조)
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(건물)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논산시장으로,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해야 함을 명시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